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9.(수)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차해영 의원 외 8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차해영 의원 외 8명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77)

2. 제안이유

- 2021년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여 제명을 포함한 구성과 내용을 전부개정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시작하므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호종료 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규정 등을 명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변경(‘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등의’ →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 나. 자립준비청년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자립지원계획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라. 실태조사와 지원 협의체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6조~안 제15조).
- 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사항을 정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38조 내지 39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3. 11. 16. ~ 11. 21.(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명칭 변경 등 조례 구성 및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립지원계획 및 실태조사를
 -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원협의체 기능을 규정하는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이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18세 이후 연령 도래로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으로 ‘보호종료아동’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2022년 정부는 가정외 ‘보호종료아동’이란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할 것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보호와 지원의 수동적 대상으로 여겨 왔던 보호종료 ‘아동’을 자립의 주체인 ‘청년’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여겨집니다.

- 원활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청년들은 자립 생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자립’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첫발을 내딛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울타리가 필요하며,

- 또한 “자립지원대상아동”을 조례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15세 이상 보호아동들의 경우 실제 자립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만큼, 자립준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개정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므로 지원대상 추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한편, 보호기간 연장 규정과 더불어 2021년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규정을 상위법에 맞춰 조례에 규정한 것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종합적으로 보면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더욱 안정적인 자립준비지원의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며, 개정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당부서의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운영·발굴과 협의체 운영 등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인 조언가를 자립준비 청년 등에게 배정해 이들이 자립 계획에 따라 현금, 현물, 자립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개인조언가와의 라포 형성 및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등 자립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아동청소년과	서길자 (8980)	백성미 (86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김소정
연 락 처	02-3153-8613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 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2. 21.]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현황

[출처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021.7.13.), 정부 관계부처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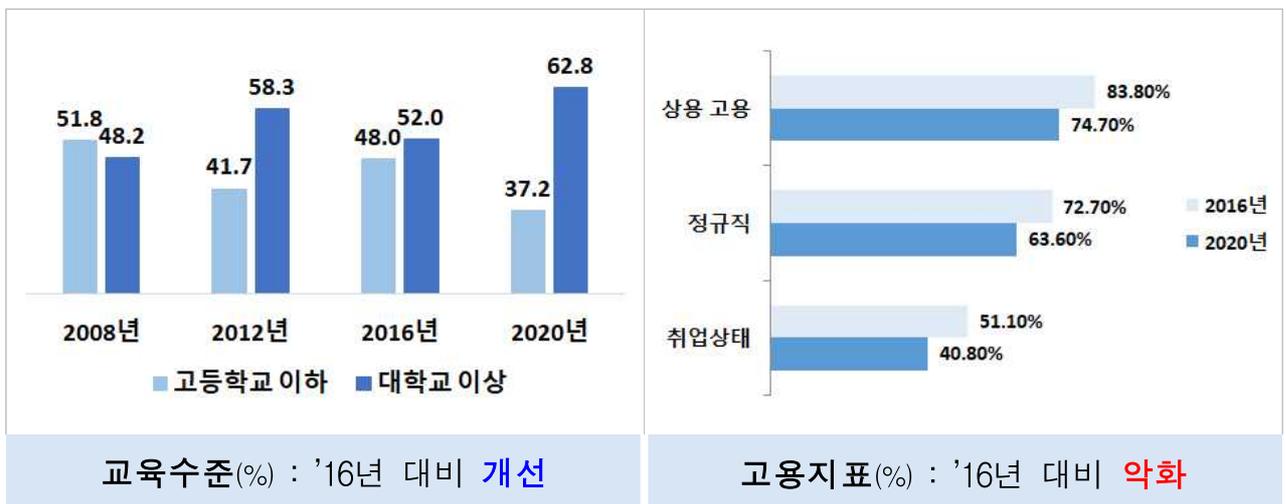
- 자립기반 현황 : 자립수당, LH 공공임대 등을 통해 다양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계나 주거안정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

- * (소득)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 36.1%, 월소득 127만원(최저임금과 52만원 차이)
- * (부채) 24.3%가 부채가 있고(평균 605.1만원), 주된 이유는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
- * (주거) 현재 고시원, 친구/지인 집, 숙박시설 등 임시·취약주거 거주율 16.7%(경험률은 20.6%)



- 자립역량 현황 :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자산관리 등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대처도 다소 미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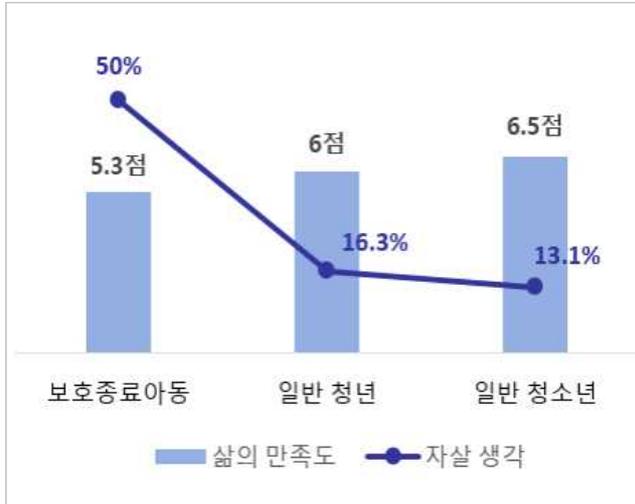
- * (교육) 대학진학률은 일반 청년(70.4%)보다 7.6%p 낮은 62.8%
- * (취업) 실업률은 일반 청년(8.9%, '20.9월)의 2배 수준인 16.3%, 비정규직 비율 36.4%
- * (자립기술) ① 주도적 결정, 경제관념, 생활기술 경험 부족 → 돈·자원 관리 등 일상적 자립역량 미흡
② 문제 발생 시 조언받을 지지기반 부족 등으로 범죄 노출 우려 등



◦ 지지체계 현황 : 불안·우울, 자살 생각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하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도 부족

* (자살 생각)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일반 청년(16.3%)보다 3배 높은 50.0%

* (사회적 관계) 부모 부재 또는 생존을 모르는 경우가 절반 이상, 보호자보다 친구 중심의 사회적 관계로 보호나 조언받을 지지기반 부재 → 범죄 노출, 극단적 선택 등



삶의 만족도(11점 만점), 자살생각 경험 비교



사회적 관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3. 마포구 보호종료 아동 현황

◦ 최근 5년간 마포구 보호종료 아동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종료 예정 (2월말기준)
보호종료 아동수	10	1	5	2	1	1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장 의사가 있는 아동이 있을 수 있어 2024년 종료 예정 아동수는 변동될 수 있음.

◦ 2023년 보호종료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그룹홈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54	29	4	21

◦ 보호종료아동 지원 현황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원)	국/시비 지원 비율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월 저축액에 1:2매칭(최대 10만원)	국40/시60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후 보호종료된아동	1,500만원 (2회 분할지급)	시100
자립수당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아동	월 40만원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총 60개월)	국50/시50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아동	월 6만원 (전출입시 서울시 거주기간 15일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	시100
내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 예정이거나 종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최대 11,000만원	
청년전세임대주택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 예정이거나 종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1인 가구 수도권 최대 12,000만원	
대학입학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대학입학 아동	300만원	시100
직업 훈련 교육 지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비(학원비, 교재비 등)지원	인당 분기별 60만원 이내(연 240만원)	국50/시50

4. 퇴소청소년 지원 현황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원)	국/시비 지원 비율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2021년 이후 청소년쉼터 퇴소하여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퇴소일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 상 보호받고 직전 6개월은 연속 보 호받았을 것.	매월 40만원 최대 3년간 지급	국50/시50